

2018년도 서울특별시 재정투융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38
----------	----

2018년 9월 1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I. 심사경과

1. 제출일자 : 2018. 8. 16.
2. 제안자 : 서울특별시장
3. 회부일자 : 2018. 8. 21.
4. 상 정 : 서울특별시의회 제283회 임시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2018. 9. 11.)
 - 안건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2018. 9. 12.)
 - 질의 및 답변, 원안의결

II. 제안설명 요지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1. 제안이유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규정에 의거 2018년도 서

울특별시의 재정투융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서울특별시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 2018년도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관련하여 교통사업특별회계 등에서 다음연도 투자재원 확보를 위해 재정투융자기금에 자금을 예탁하거나 특별회계가 재정투융자기금에서 차입한 금액의 원금 상환 및 이자납입에 따른 기금수입 증액분 3,550억원을 반영하는 것으로 세부 내역은 다음과 같음
- 교통사업특별회계(교통개선분담금계정) 151억원, 주택사업특별회계 975억원,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1,500억원 등은 특별회계 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통합관리 기금역할을 하는 재정투융자기금에 2,626억원을 예탁하고, 교통사업특별회계(교통관리계정) 645억원, 도시개발특별회계 68억원,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10억원,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201억원 등 924억원은 특별회계의 원금 및 이자 상환임
- 증액된 수입금 3,550억원은 209년 특별회계 및 기금의 투자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임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엄지운)

1. 주요내용

-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따라 특별회계의 여유자금에 대해 재정투융자기금으로 예수금이 발생하고, 예탁금 원금회수 금액이 상향조정되어,
-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 재정투융자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함

〈표 3-1〉 재정투융자기금의 수입·지출 계획변경(안)

(단위 : 백만원)

< 수입계획 >				< 지출계획 >			
목	당초계획 (A)	변경계획 (B)	증·감 (B-A)	편성목	당초계획 (C)	변경계획 (D)	증·감 (D-C)
합 계	606,516	961,562	355,046	합 계	606,516	961,562	355,046
용자금 원리금회수	21,974	21,974	-	용자금	15,200	15,200	-
예수금	55,446	318,055	262,608	예탁금	15,000	15,000	-
예탁금 원금회수	215,914	300,693	84,779	예수원리금 상환	222,865	222,865	-
예치금 회수	286,527	286,527	-	예치금	353,449	708,495	355,046
이자수입	26,654	34,313	7,659	기본경비	2	2	-

2. 검토의견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제2항¹⁾은 정책사업 지출 금액의 10분의 2를 초과하여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정하고 있음
 - 다만, 재무활동에 포함되는 예치금은 정책사업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오해할 수도 있으나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을 통하여 재무활동을 정책사업에 포함시키고 있는 바²⁾
 - 동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경우, 지출항목인 예치금을 현행보다 3,550억 4,600만원 증액시키는 것으로서 정책사업인 재무활동의 변경범위가 100.5% 증가되어 의회의 승인이 반드시 필요한 사안임
 - 아울러 동 기금의 경우, 직전회계연도 결산결과 세계잉여금이 증가됨에 따라 각 회계별로 여유자금이 발생함에 따라 각 회계와 기금 간 전·출입에 따른 의존도를 낮추고자 타 회계의 여유자금(예수금 2,626억 800만원³⁾)과 타 회계에 맡겨둔 예탁금 원금(847억 7,900만원⁴⁾) 및 이자수입(76억 5,900만원⁵⁾)을 수입계획에

1)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하 생략)

2) 행정안전부, 「2018년도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p.294

3) ① 교통사업특별회계(151억 800만원)

② 주택사업특별회계(690억원+100억원+185억원)

③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1,500억원)

편성하고,

- 수입계획의 변동에 따라 발생된 여유자금 등 3,550억 4,600만원 전액을 예치금으로 지출계획 하는 것으로 재정투융자기금이 설치목적 등을 고려할 때 동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IV. 심사결과 : 원안의결(2018.9.12.)

1.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2. 계수조정소위원회 심사경과

1) 소위원회 구성

- 일 자 : 2018. 9. 12(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의회별관 2층)
- 위원구성 :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조정 소위원회(9명)
 - 위 원 장 : 김광수(환수)
 - 부위원장 : 우형찬(교통), 장상기(교육)
 - 위 원 : 김용연(보건복지), 김인호(문화체육관광), 김정태(기획경제), 김호평(행정자치), 이상훈(도시계획), 정진술(도시안전),

4) ① 일반회계중 예탁금 원금회수(645억원)

②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중 예탁금 원금회수(202억 7,900만원)

5) ①도시개발특별회계 예탁금 이자수입(67억 8400만원),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예탁금 이자수입 (10억 1,700만원)

②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탁금 이자수입(△1억 4,300만원)

2) 소위원회 예산안 심사

○ 제1차 소위원회

- 일 시 : 9. 12(수) 14:00 ~ 21:50
-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의회별관 2층)
- 참 석 : 소위원회 위원
- 내 용 :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의

◇ 첨 부 : 2018년도 서울특별시 재정투융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1부. 끝.

2018년도 서울특별시 재정투융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의안 번호	38
----------	----

제출년월일 : 2018년 8월 16일
제 출 자 : 서울특별시장

1. 제안이유

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규정에 의거 2018년도 서울특별시의 재정투융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서울특별시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따라 특별회계의 여유 자금에 대해 재정투융자기금으로 예수금이 발생하고, 예탁금 원금 회수 금액이 상향조정되어,

나.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 재정투융자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함.

〈 수입 및 지출 변경내역 〉

(단위 : 백만원)

〈 수입계획 〉				〈 지출계획 〉			
구 분	'18년(A) 기정	'18년(B) 2차변경	증 감 (B-A)	구 분	'18년(C) 기정	'18년(D) 2차변경	증 감 (D-C)
합 계	606,516	961,562	355,046	합 계	606,516	961,562	355,046
용 자 금 원리금회수	21,974	21,974	-	용 자 금	15,200	15,200	-
예 수 금 ¹⁾	55,446	318,055	262,608	예 탁 금	15,000	15,000	-
예 탁 금 원금회수 ²⁾	215,914	300,693	84,779	예수원리금 상 환	222,865	222,865	-
예 처 금 회 수	286,527	286,527	-	예 처 금 ³⁾	353,449	708,495	355,046
이자수입 ²⁾	26,654	34,313	7,659	기본경비	2	2	-

1) 특별회계 여유자금 예탁 : 262,608백만원

- 교통사업특별회계(15,108백만원), 주택사업특별회계(97,500백만원)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150,000백만원)

2) 특별회계 예탁원금회수 및 이자수입 증액 : 92,438백만원

- 교통사업특별회계(64,500백만원), 도시개발특별회계(6,785백만원),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1,017백만원),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20,136백만원)

3) 예치금 증액 : 355,046백만원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